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0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김태선・이훈기・임호선

권칠승 • 이기헌 • 문대림

이학영 · 강훈식 · 박은정

박홍배 • 이해식 • 장철민

김영배 · 조승래 · 최기상

유호중・조 국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설비, 작업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밀착형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 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어 전문성과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HSE)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노동부 산하의 외청조직으로 설치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합니다(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의 설정·관리와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감독·지도, 산업재해의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둔다.
- ③ 산업안전보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 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신 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산업안전보건청장의 행위 또는 산업안 전보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청장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	제41조(고용노동부) <u>①</u>
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	
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	
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u>산업안전보</u>	<u>산업</u>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	<u>재해보상보험</u>
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u>.</u>
<u><신 설></u>	②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의
	설정 · 관리와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감독·지도, 산업재해의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
	<u>보건청을 둔다.</u>
<u><신 설></u>	③ 산업안전보건청에 청장 1명
	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
	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으로 보한다.</u>